

	학교기업 설립 및 운영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4. 5. 1
		최종개정일자	2016. 8. 31
		담당부서	학교기업운영위원회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학교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소재지)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원칙적으로 교사 시설 내 및 교지 내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교사 밖에도 둘 수 있다.<개정 2016.8.31>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대학의 학교기업 조직과 운영, 수입금 관리, 지출의 운용, 사업프로그램 승인, 학교기업에 대한 지원, 참여 학생의 학점인정, 시설관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.

제4조(주관부서 및 업무) 학교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주관 부서는 학교기업운영위원로 하고,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6.8.31>

1. 학교기업의 설립·폐지에 관한 사항
2.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지원, 관리 및 감독
3. 기업의 운영활동과 학교의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현장실습
4. 제품 생산 및 판매를 통한 수익사업
5. 외부 기업과의 공동연구 및 수탁 생산

제5조(조직) ①총장은 학교기업의 대표가 되며, 학교기업의 운영을 총괄하는 학교기업운영위원장을 임명한다.<개정 2016.8.31>

②학교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생산·경영·회계·판매·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.

③<삭제 2016.8.31>

④<삭제 2016.8.31>

제6조(행정책임자) ①총장은 학교기업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기업 종목별 학교기업 행정을 전담하는 행정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.

②총장은 행정책임자를 교직원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.<개정 2016.8.31>

③행정책임자는 행정업무를 수행하고,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며,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참여교수) 총장은 학교기업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학교기업 참여교수를 임명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참여정도에 따라 책임시수를 조정 할 수 있다.

제8조(설립 및 운영계획 등) 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학교 종목 및 관련계열(학과) 또는 교육과정
2. 담당직원 현황
3. 재정투자계획
4. 시설·설비 및 기자재 운용방법

②총장은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학생, 교원 등 학교구성원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③학교기업의 설립을 하고자 하는 학과(학부)에서는 학교기업 설립계획서<별지 제1호 서식>를 학교기업운영위원장(이하 "운영위원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6.8.31>

④학교기업 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기업 설립·운영계획을 수립·제출하여야 한다.

1. 학교기업의 소재지(운영 및 활용 예정 장소)
2. 사업종목
3. 관련 학부·학과(전공) 또는 교육과정
4. 종업원 현황
5. 사업비 투자 및 조달 계획
6. 시설·설비 및 기자재 운용계획
7. 학생현장실습 활용계획
8. 사업전망 및 수익창출계획
9. 기타 학교기업 발전계획

⑤운영위원장은 학교기업의 설립·운영을 인터넷, 교내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.

제9조(학교기업운영위원회 설치) ①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기업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을 두며, 위원은 다음과 같다.

1. 당연직 위원 : 산학취업처장, 기획처장, 학사지원처장, 종목별 행정책임자<개정 2016.8.31>

2. 총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교내외 인사<개정 2016.8.31>

③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16.8.31>

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.

1. 학교기업의 예산편성 및 결산
2. 학교기업의 설립 및 폐지
3. 학교기업의 운영비 지원
4. 학교기업의 운영규정에 관한 심의
5. 기타 학교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

⑤예산의 편성 및 집행·결산 등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산하에 예산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(설립·운영비 지출범위) 총장은 대학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기업의 설립·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다. 다만, 외부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은 대학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에 포

함하지 아니한다.

1. 교내에 설립된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및 학교기업의 수
2. 학교기업 관련 학부·학과(전공) 또는 교육과정의 수
3. 학교기업 관련 종업원 및 학생의 수

제11조(현장실습산업체로의 지정) ① 학교기업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.

② 총장은 학교기업의 시설·설비,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적절성, 종업원의 수 및 인적 구성, 실습 여건 및 후생복지 등이 학생의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을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산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산업체로 지정된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을 받기 7일 전까지 총장과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12조(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) 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기업 관련 학부·학과(전공) 학생들이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있다.<개정 2016.8.31>

② 제1항에 의하여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된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한 재학생은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.

제13조(회계처리) ① 학교기업의 회계는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처리한다.<개정 2016.8.31>

② 운영위원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8.31>

③ 운영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처리를 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8.31>
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, 운영계산서, 현금흐름표로 한다.

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.

제14조(지출) ① 학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.

1. 학교기업의 관리비
2.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비
3.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
4.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
5.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
6. 특허정보 조사·지식재산권의 출원·등록 및 유지 등을 위한 장비
7. 학교 시설 및 운영의 지원
8. 기타 학교기업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

② 학교기업의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.<개정 2016.8.31>

③ 지침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다.<개정 2016.8.31>

제15조(학교시설의 사용) ① 학교기업이 대학의 시설·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공공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8.31>

② 사용료 및 공공요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6조(감사) 총장은 학교기업의 사업 및 회계감사를 위해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,

감사는 매년 1회 정기 감사와 필요시 수시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7조(회계보고) 운영위원장은 매년 사업실적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회계연도 종료 후 재무제표를 공표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8.31>

제18조(사업종목) 대학의 학교기업으로 설립·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은 학교기업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다.

제19조(해산 등) ①총장은 학교기업이 경영상 또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거나 대학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을 경우 위원회 및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기업을 해산할 수 있다.

②해산되는 학교기업의 자산은 대학에 귀속한다.

③해산되는 학교기업의 종업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학교기업의 폐지와 동시에 해지된 것으로 하며,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목포과학대학교 ○○○학교기업 설립신청서

소 속		성 명	
소재지		연 락 처	전화 : C P :
사업종목			
관련 학과(학부), 교육과정과 연계			
사업목적			
사업분야 및 사업내용			
전공연계성 및 교수, 학생 현장실무 활용 방안			
시설·설비, 기자재 확충 계획 및 운용 방법			

